관세사 개인 - 2025년

보험료표

Case선택	Case A - 사고공동부담비율 미적용			Case B - 사고공동부담비율 15%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연간보험료(1청구당/연간총 보상한도액)			연간보험료(1청구당/연간총 보상한도액)				
1백만원	807,000				537,000			
2백만원	723,000	1,120,000	1,293,000	1,409,000	480,000	746,000	858,000	936,000
3백만원	669,000	1,039,000	1,201,000	1,311,000	446,000	690,000	799,000	871,000
5백만원	636,000	994,000	1,101,000	1,181,000	422,000	663,000	731,000	784,000
1천만원	595,000	946,000	1,039,000	1,115,000	395,000	628,000	690,000	741,000
1천5백만원	534,000	846,000	958,000	1,039,000	355,000	561,000	636,000	690,000
Case 선택	Case C - 사고공동부담비율 30%			※ Case A, 사고공동부담비율 미적용 조건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비율 각 15%,	- -
자기부담금	연건	연간보험료(1청구당/연간총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 않는			
1백만원	225,000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눈	분담비율 15%(E	3), 30%(C)
2백만원	202,000	315,000	363,000	395,000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u>보험 기간 중 가입조건 변경 불가</u>			
3백만원	189,000	291,000	338,000	367,000				
5백만원	178,000	280,000	308,000	331,000				
1천만원	166,000	264,000	291,000	312,000				
1천5백만원	150,000	237,000	268,000	291,000				

^{*} 보상한도는 1청구당/연간 총 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매 청구당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무사고 가입 기간에 따른 할인

구분	신규~1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 10년 이상	11년 이상 ~ 14년 이상	15년 이상
할인율	0%	5% 할인	7% 할인	10% 할인	15% 할인

사고자 보험료 할증

보험금을 수령하신 관세사는 갱신 시 수령보험금 규모에 따라 3개년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규모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백만원 이하	50%	미적용	미적용
5 백만원초과 ~ 1 천만원이하	80%	50%	미적용
1 천만원초과 ~ 2 천만원이하	150%	80%	50%
 2 천만원 초과	250%	150%	80%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관세사는 수령금액만큼 감소된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복원하여야 합니다.

사무원의 부정직행위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관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는 관세시배상책임보험 기본 담보의 50%적용을 원칙
- 가입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사무원에 대하여 보장 (관세사 유자격자 제외, 배우자 및 친족 등 제외)

보상한도액 (청구당/연간총)	자기부담금 (1 청구당)	사무원 1인당 보험료	
1천만원 / 1천만원	50 만원	80,000 원	
1선인원 / 1선인원 	1 백만원	73,000 원	

^{*} 본 특별약관의 1청구당/연간총 한도는 1천만원으로 사무원 1인당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이 아닙니다.

^{*} 보상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을 원하실 경우 록톤코리아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